

농·어업용 면세유 현황 및 정부정책방향

편집실

1. 현황

- 농·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(부가세, 특소세 등)을 전액 면제 공급(농업용 1986. 3월, 어업용 1972. 1월부터 시행)
 - 대상기종 : 농용트랙터, 농업용 난방기, 어선 등
 - 2012. 6. 30까지는 유류세 전액 면제, 2012. 12. 31까지는 75% 감면
 - * 면세유 종류 : 휘발유, 경유, 등유, 중유, 윤활유, LPG
- 농·어업용 면세유 공급현황
 - 2010년 농·어업용 면세유 사용량 : 302만㎘ (2011년 배정량 333, 10.3% 증)
 - 농업용 : (2008)198만㎘ ⇒ (2009)190만㎘ ⇒ (2010)192만㎘ ⇒ (2011. 배정량)210만㎘
 - 어업용 : (2008)99만㎘ ⇒ (2009)115만㎘ ⇒ (2010)110만㎘ ⇒ (2011. 배정량)123만㎘
 - 2010년 농·어업용 면세유 감면세액 : 1조 8,169억원
 - 농업용 : (2008)11,535억 원 ⇒ (2009)11,208억원 ⇒ (2010)11,353억원
 - 어업용 : (2008)6,021억 원 ⇒ (2009)7,522억원 ⇒ (2010)6,816억원
- 농·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
 -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년도 사용실적, 농기

- 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 유종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신청
- 기획재정부는 세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간공급한도량 배정
 - 3/4분기까지 한도량을 4~6월중에 확정하고 사용추세를 감안하여 4/4분기 한도량을 12월 초순에 확정
- 농·수협은 농·어가별 배정 후 필요시 추가배정 업무 수행
-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내용
 -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매전용카드제도 도입(2004어업용, 2008농업용)
 - 면세유 판매업소 지정제 운영(10,800개) 및 수협 직영주유소(14개) 확대
 - 면세유류 부정유통 관련자 제재 강화(2008)
 - 추징액 확대(감면세액의 10% ⇒ 40%) 및 공급 중단기간 연장(1년 ⇒ 2년)
 -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한정(2011)
 - 일시적 농업종사자를 제외하여 실질적인 농가에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나 미등록농가의 등록기간 확보와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행유예(2011. 6. 30까지)

2. 공급효과

□ 농·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농어업의 기계화 및 대형화를 촉진하여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생산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기여

* 농가인구 : (1995)4,851천명 \Rightarrow (2000)4,031 \Rightarrow (2008)3,187 \Rightarrow (2009)3,117 \Rightarrow (2010)3,068(Δ 1.6%)

* 어가인구 : (1995)347천명 \Rightarrow (2000)251 \Rightarrow (2008)192 \Rightarrow (2009)184 \Rightarrow (2010)171(Δ 7.1%)

* 농업생산액 : (1995)26조3천억원 \Rightarrow (2000)32조 \Rightarrow (2008)38조5천 \Rightarrow (2009)41조4천억원(\uparrow 7.5%)

* 어업생산액 : (1995)3조8천억원 \Rightarrow (2000)4조1천 \Rightarrow (2008)6조3천 \Rightarrow (2009)6조9천억원(\uparrow 9.5%)

□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농업을 촉진하여 신선 채소와 과일류의 연중 공급 기반구축 및 수출 농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

* 채소수출실적 : (2005) 231백만\$ \Rightarrow (2008) 234백 만\$ \Rightarrow (2009) 251백만\$ \Rightarrow (2010) 302백만\$

* 화훼수출실적 : (2005) 52백만\$ \Rightarrow (2008) 76백만\$ \Rightarrow (2009) 77백만\$ \Rightarrow (2010) 103백만\$

□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

○ 농가당 영농비 경감액 : (1995) 84천원 \Rightarrow (2008) 952천원 \Rightarrow (2010) 964천원

* 2010년 조세감면액 : 1조 1,353천억원, 2010년 농가수 : 1,177천호

3. 면세유 지속 필요성

□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동반 상승으로 농어가 유류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면세유 공급 중단 및 감면 축소는 농어가 경영에 악조건을 가중하는 결과 초래

농가당 감면세액이 농업경영비에 미치는 효과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
농업경영비(A)	15,231	15,696	16,189	16,924	17,123
면 세 액 (B)	1,054	1,152	952	937	964
비 율 (B/A)	6.9	7.3	5.9	5.5	5.6

○ 어업의 경우 한 가구당 사용량은 농업에 비해 10배 규모

*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/농가수/가구당 사용량(2010년)
: 192만㎘/1,177천호/1.6㎘

* 어업용 면세유 사용량/어가수/가구당 사용량(2010년)
: 110만㎘/66천호/16.7㎘

□ 면세유류 감면세액 축소 및 중단 시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채산성 악화로 농어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

면세유 감면 폭 조정 시 농·어가 부담액 추정

(2010년도 기준)

(단위 : 억원)

구 分	100% 감면	75% 감면	50% 감면	25% 감면	0%
면세액	18,169	13,627	9,084	4,542	-
농가부담액	-	2,838	5,677	8,515	11,353
어가부담액	-	1,704	3,408	5,112	6,816

○ 특히, 유류비의 의존도가 높은 시설원예·축산농가·어선어업의 경우 농·어업 경영비 상승은 농·수·축산물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상승과 국민가계 부담으로 작용

- 채소, 과일, 화훼류의 품질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약화

* 시설원예 가온면적(15천㏊) 중 91.3%(13.4천㏊) 가 유류 기온

- 어업인의 영어비용 증가로 출어포기 등 어가경제 파산 위기

* 어선어업의 경우 어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은 평균 20.3%

어선어업의 어업비용(출어비, 감가상각비, 임금 및 관리비) 구성(2009년 기준)

(단위 : 천원, %)

구분	어업 비용 합계	출어비				임금 및 일반관리비			
		소계	여구비	연료비	수리비	기타	소계	임금	감가 상각비
금액	744,558	352,949	47,952	151,139	41,297	112,561	369,651	263,874	105,777
비중	100.0	47.4	6.44	20.3	5.5	15.1	49.6	35.4	14.2

□ 면세유는 농·어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심리적 기대치 충족 역할

- 농·어업 경영비 경감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근로자에 비해 소득구조가 열악한 농·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 수행

도시근로자 대비 농·어가 소득 비율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1990	1995	2000	2005	2010
도시근로자소득(A)	11,343	22,771	28,659	39,025	48,092
농가소득(B)	11,026	21,803	23,072	30,503	32,121
비율(B/A)	97.2	95.7	80.5	78.2	66.8
어가소득(C)	10,023	18,780	18,875	28,028	35,696
비율(C/A)	88.4	82.5	65.9	71.8	74.2

4. 정책방향

□ 농·어업용 면세유 농·어가 실 사용량 전량 공급 추진

- 농·어가에서 필요한 실 사용량 전량을 공급, 부족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확대 공급 추진
 - 배정량 부족 농어가가 면세유 추가 신청 시 실 사용량 확인 후 유보량을 활용하여 추가 배정
- 실 사용량 시스템 구축으로 제도의 투명성

과 신뢰성 확보

- 유류 사용이 많은 기종에 대해 시간계측 기 부착 의무화 확대

* (현재) 농업용 난방기 등 4개 기종 ⇒ (2011.7.1 이후) 곡물건조기 등 3개 기종 추가

□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확대 추진(현 39개 기종)

○ 신규 개발되거나 농작업 사용이 증가하는 농기계 포함 추진

* 2011년 조세김면 건의 : 농용굴식기(자체중량 1톤 미만), 사료배합기 등

□ 면세유 사용 농어가 등 사후관리 강화

○ 품관원에 농가별 배정량 조정 권한 부여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

○ 농식품부(품관원), 시·도 및 농·수협 합동 교차점검 실시

○ 선박 입출항 확인 등 조업사실 확인 강화

□ 에너지절약형 시설·장비의 개발·보급

○ 지하공기열 이용 히트펌프, 에너지 효율 등급제 개발

○ LED 집어등(集魚燈), 유류절감 장치 보급 등

□ 농·어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추진

○ 2011년 조세제도 개편방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 추진

- 조세감면전의서 기재부 제출(2011. 5월), 기재부·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(6~8월)@@